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4
----------	-------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관련 조문신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조례 제3조의2)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 2)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1213, 2022. 4. 28.)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22. 9.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u></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
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민 선 부
연 락 처	02-3153-8572